



# Tax News Flash

## 간편 APA의 도입

2014년 11월 24일

### 개요

국세청은 2015년부터 중소 외국계기업을 대상으로 '간편 APA'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동 프로그램은 현존하는 APA 프로그램을 간편화 함으로써 중소 외국계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간편 APA는 APA 신청 시 최소한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이며, 신청 후 1년 이내에 조기 승인되어 기존 APA 보다 타결 소요시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입니다.

### 현 APA 프로그램

정상가격 사전승인 제도 (Advance Pricing Agreement, "APA")는 납세자의 신청과 과세당국의 심사를 거쳐 납세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입니다. APA 승인 내용을 충족하면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3~5년간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의 부담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sup>1</sup>

APA 심사 과정에서 특수관계자간 거래 성격과 거래 당사자들의 수행기능 및 부담위험, 비교대상 선정 등에 대한 국세청의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장기간의 심사 과정은 2년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납세자에게 이전가격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 등의 부담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APA 프로그램은 주로 대기업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간편 APA

국세청은 APA의 혜택을 외국계 중소기업에게 확대하기 위해 2015년부터 간편 APA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중소기업<sup>2</sup>이 간소화된 서류만 제출하여 신청하면 1년 이내에 처리되는 간편 APA는 중소 외국계 기업의 APA 진입장벽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납세자는 국세청과의 사전 상담을 거쳐 APA 신청 시 한국에서의 사업 내용과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구조 등에 대한 최소한의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간편 APA 신청 접수 후, 1년 이내에 검토 및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간편 APA 프로그램은 일방 APA에만 한정됩니다.<sup>3</sup>

### 적용대상

간편 APA는 우선 도소매, 서비스,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 될 예정입니다. 전체 외국계기업 9,212개의 76%인 7,023개의 기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동 프로그램은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sup>1</sup> 이전가격세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재계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

<sup>2</sup> 연 매출 5 백억 원 이하인 기업

<sup>3</sup> 쌍방 APA는 양 과세당국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간편 APA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참고: 간편 APA 시행으로 간소화되는 제출서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등]에 열거된 제출서류 중 제4호는 생략 또는 약식 제출하여 자료제출 범위가 최소화 됩니다. 납세자와 국세청은 사전상담을 통해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미리 협의하게 됩니다.

호	제출 자료	제출여부
1	대상기간, 대상 국제거래, 거래 당사자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	O
2	거래 당사자의 사업연혁, 사업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O
3	거래 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O
4	신청된 정상가격의 세부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가	국조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에 따른 비교 가능성 평가방법 및 요소별 차이조정방법	
나	비교대상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처리기준의 차이와 그 조정방법	
다	거래별 구분 재무자료 또는 원가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작성기준	
라	2 개 이상의 비교대상거래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단되는 범위와 그 도출방법	
마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및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5	국조법 시행령 제 7 조제 2 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실제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	O
6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서	X
7	기타 사전승인 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자료	O

## 연락처

### 이전가격

이희태 전무

3781-9083

htlee@samil.com

전원엽 상무

3781-2599

wychon@samil.com

안익홍 전무

3781-2594

henryan@samil.com

조정환 상무

709-8895

jhwancho@samil.com

양준규 상무보

709-8700

joonyang@samil.com

김영주 이사

709-4098

yjkim@samil.com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is for general guidance on matters of interest only and is not meant to be comprehensive. The application and impact of laws can vary widely based on the particular facts involved.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your usual Samil PwC client service team or professionals listed above.

This publication contains information on selected current developments in Korean taxation, laws and regulations compiled by the Tax Service Group of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 network firm of PricewaterhouseCoopers. Please visit our website at [www.samil.com](http://www.samil.com) for practical insights and professional solutions to current and emerging business issues.

© 2014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